

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552
----------	-----

제안연월일 : 2026. 3. .
제안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-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평창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,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 제7조(의회의 동의)에 따라 평창군의회를 통과시키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 관리운영 위탁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(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)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의5(수익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
- 「지방공기업법」 제2조(적용 범위)
- 「지방공기업법」 제71조(대행사업의 비용 부담)
-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 제7조(의회의 동의)
- 「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9조(사업)

다. 위탁사무 내용 등 위탁 범위

- 위탁시설 :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
- 위탁자 : 평창군
- 수탁자 : 평창군시설관리공단
- 위탁내용 : 시설물 관리·운영 일체

라. 위탁시설 개요

- 소재지 : 평창읍 바위공원길 85(평창읍 중리 32)
- 규모 : 43,098㎡(건축 연면적 733.28㎡)
 - (본관) 지상1층 : 관리실, 세미나실, 체험장, 전시실, 전망대 등
 - (야외) 물놀이시설 : 메뚜기 슈팅 헌터, 물기둥
- 수생태공원 : 생태습지, 수질 정화지, 연결수로, 조경 등
- 위치도



마. 민간위탁기간 : 2026. 7. ~ 2030. 12.(4년6월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수의계약(평창군시설관리공단)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의5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 제1항제1호에 의거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
-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 관리운영 위탁은 「지방공기업법」 제2조 (적용 범위) 제1항제9호에 따라 '공용·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'에 해당되므로 공단에 위탁 가능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[2026년 하반기]

구 분		소요예산	비 고
인 건 비 (3인 기준)	기 본 급	39,130,000	
	제 수 당	4,099,000	정근가산, 경영활동, 명절휴가비 포함
	정 액 급 식 비	2,880,000	
	소 계 (A)	46,109,000	
경 비	시설관리 소모품 및 재료비	5,216,000	
	유류비(예초기, 송풍기)	600,000	
	소 규모 행사 운영	3,000,000	
	안전 관리 대 행 용역	4,414,000	
	조경 유지 관리 용역	35,000,000	
	정 수 기 임 차	500,000	
	공 공 요 금 및 제 세 (상하수도, 전기료 등)	29,300,000	
	소 계 (B)	78,030,000	
운 영 원 가 (C=A+B)		124,139,000	

※ 시설관리직 2명, 기간제근로자 1명

아.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

- 운영인력 및 비용 절감
- 전문성과 체계성을 확보하여 효율성 증대, 이용 활성화 및 만족도 향상
- 인근 시설과 통합관리할 경우 효율성 · 만족도 극대화 가능
⇒ 행정력 절감, 운영 효율성 및 이용자 만족도 향상

관계법령 발취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**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**

□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

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**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“관리위탁”이라 한다) 할 수 있다.**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약의 목적·성질·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.

□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

제19조(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)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.

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
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
제19조의5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.

1.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

□ 「지방공기업법」

제2조(적용 범위)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(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·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(이하 “지방직영기업”이라 한다)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.

9. 주택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다)·토지 또는 공용·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

제71조(대행사업의 비용 부담) ①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.

□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」

제7조(의회의 동의)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□ 「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제19조(사업) ① 공단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.

6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중 평창군의회 동의를 얻은 사업